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단966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1. 28.

판결 선고2024. 12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M, N, R, Q, M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호
부분 24.30㎡를 인도하고,
나. 각 1,64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0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
돈과 각 2024. 5. 10.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5,000원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지원

별지